

2021년 해외수출입 기업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문

[붙임1] 지원금 신청서

[붙임2] 수출입 신고필증 대체서류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 동해항 항로활성화를 위한 -

2021년 해외수출입 기업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에서 강원권 기업들의 동해항을 통한 해외 수출입 활성화를 위해 「2021년 해외수출입 기업지원 사업」의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1 사업 개요

- 분야 : 해외 수출입
- 사업목적 : 도내 수출입 기업 수출입물류비 지원을 통한 동해항 무역항로 활성화
- 지원규모 : 50,000천원
- 지원대상 : 동해항을 통해 컨테이너 화물의 해상 수출입을 진행하는 강원권 기업
 - *수출입 대상국 및 항구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일본 마이주르
 - *컨테이너의 실화주(국내 수입자 또는 수출자) - 제출 서류상에 기재 된 실화주를 기준으로 함
 - *도내 기업이 실질적 생산자/수요자 인 경우 - 증빙서류를 통한 심의
- 사업내용 : 동해항을 출·도착 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물류비 지원
 - *물류비: 해상운임, 동해항 터미널 비용(부두 사용료)

2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1. 7. 29. ~ 2021. 12. 15.
- 신청방법 :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공지사항 신청서 다운로드, 담당자 이메일 발송
- 지급절차 : 물류비 사용→ 지원금 신청→ 서류검토 및 화주 심의→ 지원
 - *신청 이후 선적된 화물에 대해서 지원함.

3 지원 내용

- 선적 조건(Incoterms)에 따라 일부 지원 항목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예) FOB 조건 수출자의 경우 해상운임은 미지원.

구분	지원 항목	비고																				
수출화물 (동해→ 블라디보스토크)	1.해상운임: 해상운임의 20% *유류할증료 ¹⁾ 포함 2.부두 사용료(컨테이너 1대당):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컨테이너 type</th> <th>지원금</th> </tr> </thead> <tbody> <tr> <td>20DC</td> <td>130,000원</td> </tr> <tr> <td>20RF</td> <td>230,000원</td> </tr> <tr> <td>40HC</td> <td>180,000원</td> </tr> <tr> <td>40HQRF</td> <td>340,000원</td> </tr> </tbody> </table>	컨테이너 type	지원금	20DC	130,000원	20RF	230,000원	40HC	180,000원	40HQRF	340,000원	•해상운임 또는 부두사용료 중 택1 •FCL 화물에 한함 •해상운임 지원 한도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컨테이너 type</th> <th>지원금</th> </tr> </thead> <tbody> <tr> <td>20DC</td> <td>최대 38만 원</td> </tr> <tr> <td>20RF</td> <td>최대 50만 원</td> </tr> <tr> <td>40HC</td> <td>최대 68만 원</td> </tr> <tr> <td>40HQRF</td> <td>최대 80만 원</td> </tr> </tbody> </table>	컨테이너 type	지원금	20DC	최대 38만 원	20RF	최대 50만 원	40HC	최대 68만 원	40HQRF	최대 80만 원
컨테이너 type	지원금																					
20DC	130,000원																					
20RF	230,000원																					
40HC	180,000원																					
40HQRF	340,000원																					
컨테이너 type	지원금																					
20DC	최대 38만 원																					
20RF	최대 50만 원																					
40HC	최대 68만 원																					
40HQRF	최대 80만 원																					
수입화물 (블라디보스토크 →동해)	1.해상운임: 해상운임의 20% *유류할증료 ²⁾ 포함, 특송화물 제외 2.부두 사용료(컨테이너 1대당):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컨테이너 type</th> <th>지원금</th> </tr> </thead> <tbody> <tr> <td>20DC</td> <td>130,000원</td> </tr> <tr> <td>20RF</td> <td>230,000원</td> </tr> <tr> <td>40HC</td> <td>180,000원</td> </tr> <tr> <td>40HQRF</td> <td>340,000원</td> </tr> </tbody> </table>	컨테이너 type	지원금	20DC	130,000원	20RF	230,000원	40HC	180,000원	40HQRF	340,000원	•해상운임 또는 부두사용료 중 택1 •FCL 화물에 한함 •해상운임 지원 한도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컨테이너 type</th> <th>지원금</th> </tr> </thead> <tbody> <tr> <td>20DC</td> <td>최대 22만 원</td> </tr> <tr> <td>20RF</td> <td>최대 50만 원</td> </tr> <tr> <td>40HC</td> <td>최대 35만 원</td> </tr> <tr> <td>40HQRF</td> <td>최대 80만 원</td> </tr> </tbody> </table>	컨테이너 type	지원금	20DC	최대 22만 원	20RF	최대 50만 원	40HC	최대 35만 원	40HQRF	최대 80만 원
컨테이너 type	지원금																					
20DC	130,000원																					
20RF	230,000원																					
40HC	180,000원																					
40HQRF	340,000원																					
컨테이너 type	지원금																					
20DC	최대 22만 원																					
20RF	최대 50만 원																					
40HC	최대 35만 원																					
40HQRF	최대 80만 원																					

구분	지원 항목	비고																				
수출화물 (동해→마이주르)	1.해상운임: 해상운임의 20% *유류할증료 ³⁾ 포함 2.부두 사용료(컨테이너 1대당):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컨테이너 type</th> <th>지원금</th> </tr> </thead> <tbody> <tr> <td>20DC</td> <td>130,000원</td> </tr> <tr> <td>20RF</td> <td>230,000원</td> </tr> <tr> <td>40HC</td> <td>180,000원</td> </tr> <tr> <td>40HQRF</td> <td>340,000원</td> </tr> </tbody> </table>	컨테이너 type	지원금	20DC	130,000원	20RF	230,000원	40HC	180,000원	40HQRF	340,000원	•해상운임 또는 부두사용료 중 택1 •FCL 화물에 한함 •해상운임 지원 한도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컨테이너 type</th> <th>지원금</th> </tr> </thead> <tbody> <tr> <td>20DC</td> <td>최대 18만 원</td> </tr> <tr> <td>20RF</td> <td>최대 27만 원</td> </tr> <tr> <td>40HC</td> <td>최대 32만 원</td> </tr> <tr> <td>40HQRF</td> <td>최대 46만 원</td> </tr> </tbody> </table>	컨테이너 type	지원금	20DC	최대 18만 원	20RF	최대 27만 원	40HC	최대 32만 원	40HQRF	최대 46만 원
컨테이너 type	지원금																					
20DC	130,000원																					
20RF	230,000원																					
40HC	180,000원																					
40HQRF	340,000원																					
컨테이너 type	지원금																					
20DC	최대 18만 원																					
20RF	최대 27만 원																					
40HC	최대 32만 원																					
40HQRF	최대 46만 원																					
수입화물 (마이주르→동해)	1.해상운임: 해상운임의 20% *유류할증료 ⁴⁾ 포함 2.부두 사용료(컨테이너 1대당):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컨테이너 type</th> <th>지원금</th> </tr> </thead> <tbody> <tr> <td>20DC</td> <td>130,000원</td> </tr> <tr> <td>20RF</td> <td>230,000원</td> </tr> <tr> <td>40HC</td> <td>180,000원</td> </tr> <tr> <td>40HQRF</td> <td>340,000원</td> </tr> </tbody> </table>	컨테이너 type	지원금	20DC	130,000원	20RF	230,000원	40HC	180,000원	40HQRF	340,000원	•해상운임 또는 부두사용료 중 택1 •FCL 화물에 한함 •해상운임 지원 한도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컨테이너 type</th> <th>지원금</th> </tr> </thead> <tbody> <tr> <td>20DC</td> <td>최대 16만 원</td> </tr> <tr> <td>20RF</td> <td>최대 23만 원</td> </tr> <tr> <td>40HC</td> <td>최대 29만 원</td> </tr> <tr> <td>40HQRF</td> <td>최대 42만 원</td> </tr> </tbody> </table>	컨테이너 type	지원금	20DC	최대 16만 원	20RF	최대 23만 원	40HC	최대 29만 원	40HQRF	최대 42만 원
컨테이너 type	지원금																					
20DC	130,000원																					
20RF	230,000원																					
40HC	180,000원																					
40HQRF	340,000원																					
컨테이너 type	지원금																					
20DC	최대 16만 원																					
20RF	최대 23만 원																					
40HC	최대 29만 원																					
40HQRF	최대 42만 원																					

1) PSS, GRI, PCS, DSG, CIC, BAF, CAF, EBS, LSS

2) PSS, GRI, PCS, DSG, CIC, BAF, CAF, EBS, LSS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고
수출화물	1. 지원금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통장사본 4. 수출신고필증 5. B/L 6. C/I, Packing List 7. 입금확인증(이체내역) 8. 수출계약서 사본 9. 기타 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필요시)	7. 입금확인증(이체내역)은 수출자가 포워딩 또는 선사측에 지불한 물류비 내역임
수입화물	1. 지원금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통장사본 4. 수입신고필증 5. B/L 6. C/I, Packing List 7. 입금 확인증(이체내역) 8. 계약서 사본(수출입) 9. 수입자와 최종수요자가 다른 경우 증빙 서류 제출(계약서 또는 관련 증빙 서류) 10. 기타 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필요시)	7. 입금확인증(이체내역)은 수출자가 포워딩 또는 선사측에 지불한 물류비 내역임

4 문 의 처

-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물류연구기획팀
 - 담당자 : 김주희 연구원
 - 전화/메일 : 033)522-6503 / juhwi.kim@northernlogis.kr

3) PSS, GRI, PCS, DSG, CIC, BAF, CAF, EBS, LSS

4) PSS, GRI, PCS, DSG, CIC, BAF, CAF, EBS, LSS